

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1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4.12.10.부터 사단법인 탁틴내일에 위탁 운영 중으로, 2019.7.1.부터 3년의 재위탁 기간이 2022.6.30.자로 만료될 예정임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2년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), 2차(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
- 다. 현 위탁법인이 청소년성교육 및 성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2024.6.30.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재계약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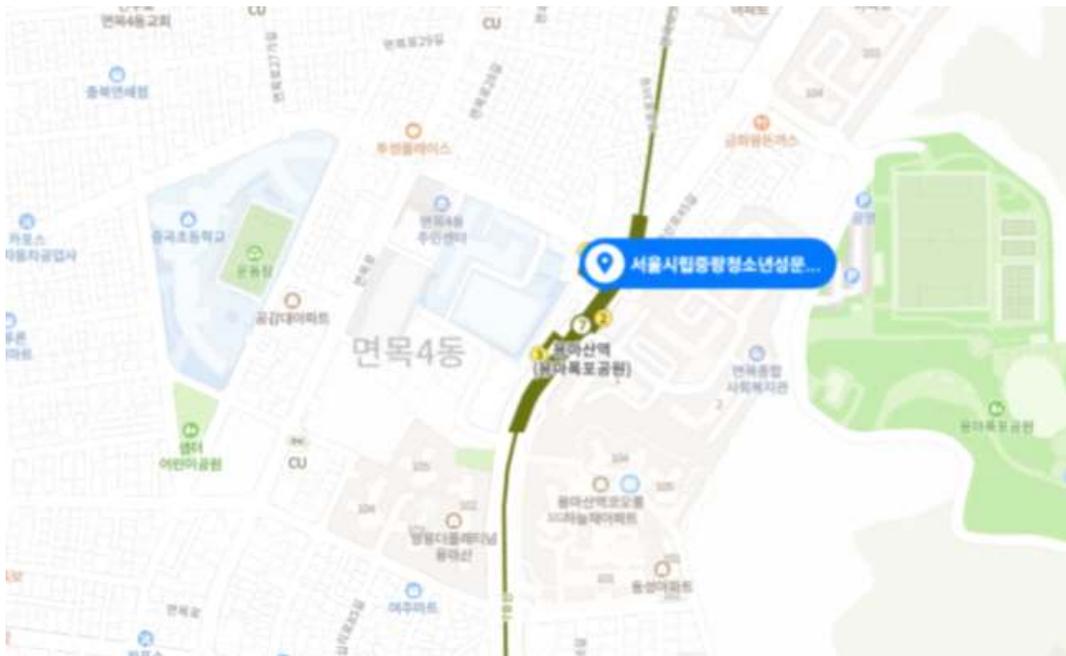
-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청소년시설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
- 현 위탁법인은 1995년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, 2021년 현재까지 장애인성교육관련 매뉴얼 개발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,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외에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, 교육청과 협업을 통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운영 등 아동·청소년이 주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음
-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외에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,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및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등 아동·청소년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성폭력상담소, 교육취약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바,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자 함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아동·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
- 출장 성교육, 거리상담활동, 학부모 성교육
- 청소년 성교육 지도자 양성
-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
- 청소년 성교육 기관·단체 연계 활동 지원
-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중랑구 용마산로 지하227 (7호선 용마산역사 내)
- 시설규모 : 면적 129㎡(106호, 107호, 303호)
- 주요시설 : 성교육체험관, 교육실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2년(2022. 7. 1 ~ 2024. 6. 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사단법인 탁틴내일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238백만원('22년)

○ 산출근거

- 인건비 229백만원, 사업비 9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이승연 (☎ 2133-4133)